

의안번호	
의 퇴 인	주호영의원
회 답 일	2026. 4. 27.
추계번호	25B6773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	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.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(제1항) ※ 현행은 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 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	재량·의무 규정
2	안 제8조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)	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하고, 「공항시설법」 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(제1항) ※ 현행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‘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’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	의무규정
		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3	안 제13조의2(종전부지의 양여 등) 신설	국방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지를 「국유재산법」 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(제1항) 「국유재산법」 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	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<삭 제>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)	
3	안 제13조의2(중전부지의 양여 등) 신설	
4	안 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중 ‘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’을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,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됨
-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변경¹⁾하고, 해당 중전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,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

1) 개정안은 주호영·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000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해당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,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이전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업을 시행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, 사업 방식 변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국방부는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경우,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
 -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,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, 「군 시설사업 관리훈령」 및 「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소요제기 및 결정, 중기계획 반영, 선행연구, 사업타당성 조사, 대관협의, 적정성 검토, 예산 요구·확정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등의 단계를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 등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의 재정소요를 추정해야 하는데,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의 추진단계를 고려할 때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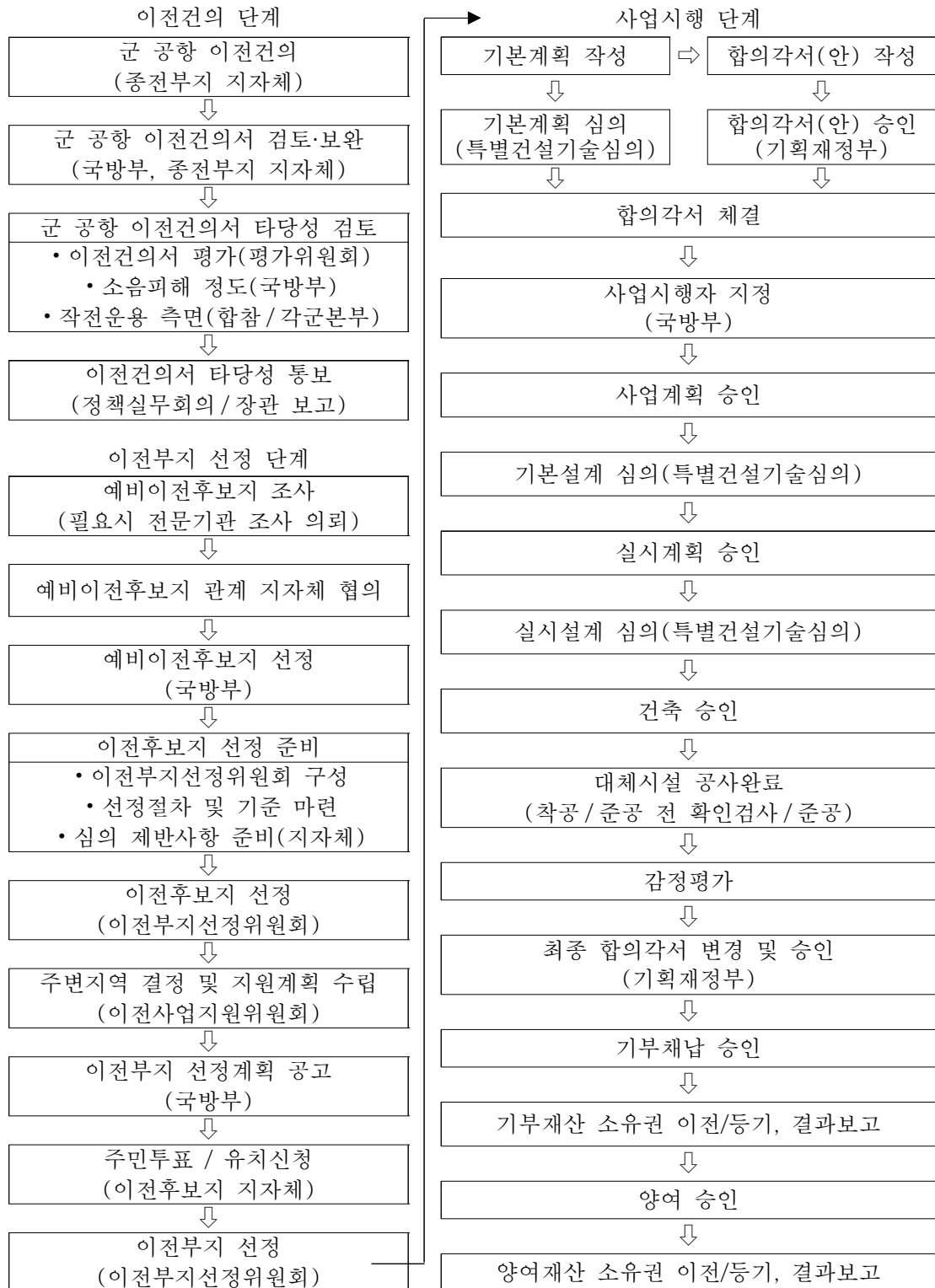
- 국방부에 따르면,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후, 소요재원 확보 문제로 대구시와 재정경제부 간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며, 2029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33년에 군 공항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

[표 1]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

시 기	주요 추진내용
2014.5월	대구시 이전 건의
2016.8월	국방부 이전 타당성 '적정' 통보
2020.8월	주민투포 후 군위군 소보면·의성군 비안면을 이전부지로 선정
2022.8월	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(대구시)
2023.8월	사업시행자(대구시) 지정
2025.1월	사업계획 승인
2025.3월	대구시의 사업방식 변경(특수목적법인 시행 → 직접 공영개발) 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신청
2026.1월	소요재원 확보 문제로 대구시-재정경제부 간 정부 지원방안 협의 중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2]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 절차도



자료: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」(국방부훈령 제2857호) 별표1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